
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4.

발 의 자 : 송석준 · 고동진 · 이종배
강대식 · 윤한홍 · 김성원
이인선 · 박충권 · 김상훈
김미애 · 김형동 · 김예지
유용원 · 곽규택 · 배준영
박덕흠 · 유상범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·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운영, 개인정보의 수집·보존 및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.

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·기록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에 따라 동 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인권실태 및 침해 사례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·관리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해당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의 보존·관리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

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및 수집정보가 좌우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·기록한 자료의 보관·보존·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,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핵심 자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·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).
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인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기록센터의”를 “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및 기록센터의”로 한다.

- ⑤ 기록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. 동 시스템 및 기록센터에서 수집·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, 해당 자료를 보존·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북한인권기록센터) ① ~ ④ (생 략) ⑤ <u>기록센터에서 수집·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,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·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.</u> ⑥ 그 밖에 <u>기록센터의</u>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제13조(북한인권기록센터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기록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. 동 시스템 및 기록센터에서 수집·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, 해당 자료를 보존·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.</u> ⑥ -----<u>북한인권종합정보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</u>----- ----- -----.